

신북방

# 몽골 MONGOLI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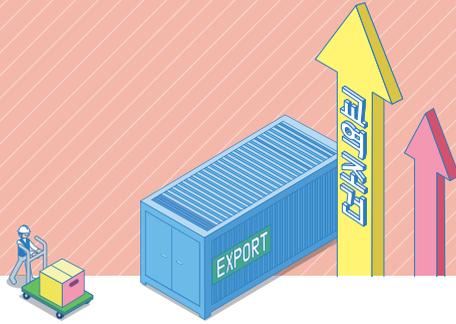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58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602
03. 비관세장벽 현황	605
04. 수출 애로사항	612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614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몽골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 [ 용어 정의 ]



###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2년 몽골 식품 시장규모는 37억 8,610만 달러(한화 약 4조 9,598억 원)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20억 710만 달러(한화 약 2조 6,293억 원)로 전체의 53.0%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8.9% 증가함
    - \* 육류가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류(10.2%), 낙농품(7.8%), 과일 및 견과류(7.5%)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7억 7900만 달러(한화 약 2조 3,305억 원)로 전체의 47.0% 차지하며, 전년 대비 18.2% 증가함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22.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으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9%), 편의식품(6.4%), 소스 및 향신료(2.6%), 스프레드 및 당류(1.6%), 영유아용 식품(0.4%) 순임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b>전체</b>	2,633.7	2,773.8	2,951.5	3,193.1	3,786.1	100.0	18.6
<b>신선식품</b>	1,391.3	1,465.7	1,560.1	1,688.2	2,007.1	53.0	18.9
- 육류	672.4	708.0	753.1	814.5	973.7	25.7	19.5
- 채소류	265.5	280.0	298.4	323.2	385.6	10.2	19.3
- 낙농품	205.3	216.3	230.3	249.3	297.1	7.8	19.2
- 과일 및 견과류	200.3	211.2	225.0	243.7	283.9	7.5	16.5
- 유지류	47.8	50.2	53.3	57.5	66.8	1.8	16.2
<b>가공식품</b>	1242.4	1308.1	1391.4	1504.9	1779.0	47.0	18.2
- 스낵류	601.2	633.6	674.4	729.9	866.7	22.9	18.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43.1	361.4	384.6	416.2	490.2	12.9	17.8
- 편의식품	172.1	180.4	191.0	205.7	243.2	6.4	18.2
- 소스 및 향신료	70.3	73.7	78.0	84.0	99.7	2.6	18.7
- 스프레드 및 당류	41.9	44.4	47.8	52.3	61.6	1.6	17.8
- 영유아용 식품	11.7	12.2	12.9	13.6	14.1	0.4	3.7
- 펫푸드	2.1	2.4	2.7	3.2	3.5	0.1	9.4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함
  - 연령대 별 인구 비중은 0~14세(20.7%), 15~24세(13.5%), 25~34세(15.9%), 35~44세(14.6%), 45~54세(11.2%), 55세 이상(24.2%)로 확인됨
  - 여성 인구 수는 약 171만 명(약 50.4%), 남성 인구 수는 약 169만 명(49.6%)으로, 남녀 성비가 비슷함
- 2022년 가구 수는 총 74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평균 2,587달러(한화 약 339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34.4%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6.1% 증가함
- 2022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120.7달러(한화 약 146만원)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모든 품목의 소비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594.1달러(한화 약 77만원)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함
    - \* 육류 소비액은 288.2달러(한화 약 37만원)로 25.7%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10.2%), 낙농품(7.8%), 과일 및 견과류(7.5%), 유지류(1.8%) 순으로 나타남
  -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은 526.6달러(한화 약 69만원)로 집계됨
    - \* 스낵류 소비액이 256.6달러(한화 약 33만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22.9%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9%), 편의식품(6.4%) 순임

###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22)	전년대비 증감률
<b>전체</b>	830.9	860.3	900.2	959.2	1,120.7	100.0	16.8
<b>신선식품</b>	439.0	454.5	475.8	507.2	594.1	53.0	17.1
- 육류	212.1	219.5	229.7	244.7	288.2	25.7	17.8
- 채소류	83.8	86.8	91.0	97.1	114.1	10.2	17.5
- 낙농품	64.8	67.1	70.2	74.9	87.9	7.8	17.4
- 과일 및 견과류	63.2	65.5	68.6	73.2	84.1	7.5	14.9
- 유지류	15.1	15.6	16.3	17.3	19.8	1.8	14.5
<b>가공식품</b>	391.9	405.8	424.4	452.0	526.6	47.0	16.5
- 스낵류	189.6	196.5	205.7	219.2	256.6	22.9	17.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8.2	112.1	117.3	125.0	145.1	12.9	16.1
- 편의식품	54.3	55.9	58.3	61.8	72	6.4	16.5
- 소스 및 향신료	22.2	22.9	23.8	25.2	29.5	2.6	17.1
- 스프레드 및 당류	13.2	13.8	14.6	15.7	18.2	1.6	15.9
- 영유아용 식품	3.7	3.8	3.9	4.1	4.2	0.4	2.4
- 펫푸드	0.7	0.8	0.8	1.0	1.0	0.1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은 5억 4,739만 4,000달러(한화 약 7,171억 원)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함
  -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88.7%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음
    - \* 對중국 수출액은 4억 8,555만 3,000달러(한화 약 6,361억 원)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 이란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729만 5,000달러(한화 약 96억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적은 편임
    -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한 326만 8,000달러(한화 약 43억 원)로 집계되며 전체 수출액의 0.6%의 비중을 차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518,466	499,092	349,579	462,352	547,394	100.0	18.4	1.4
1 중국	472,565	453,609	327,381	427,316	485,553	88.7	13.6	0.7
2 이란	9,022	21,138	1,826	1,500	7,295	1.3	386.3	-5.2
3 카자흐스탄	2,120	466	1,073	1,155	7,183	1.3	521.9	35.7
4 독일	2,700	1,918	403	3,305	6,961	1.3	110.6	26.7
5 러시아	8,765	1,480	585	1,029	6,782	1.2	559.1	-6.2
6 홍콩	1,444	62	2,551	3,694	4,832	0.9	30.8	35.3
7 이탈리아	2,924	2,812	2,641	4,324	4,702	0.9	8.7	12.6
8 스페인	51	7	1	835	4,372	0.8	423.6	204.3
9 한국	1,796	1,668	996	2,417	3,268	0.6	35.2	16.1
10 일본	3,108	3,764	2,799	4,967	3,244	0.6	-34.7	1.1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탈각한 잣, 말·당나귀 고기, 동물 내장, 보존 돼지육 기타 등임
  - \* 탈각한 잣의 수출액은 14.7%의 비중을 차지하며, 8,025만 5,000달러(약 1,051억 원) 규모임
  - \* 말·당나귀 고기(3.7%)는 전년 대비 41.7% 신장하여 2,046만 3,000달러(약 268억 원) 규모를 형성함

###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 '22)	증감률	
							전년비 ( '21/'22)	연평균 ( '18~'22)
<b>전체</b>	518,466	499,092	349,579	462,352	547,394	100.0	18.4	1.4
1 탈각한 잣	0	0	0	0	80,255	14.7	-	-
2 말·당나귀 고기	64,974	57,689	33,047	14,443	20,463	3.7	41.7	-25.1
3 동물 내장	8,684	8,627	9,269	15,356	16,204	3.0	5.5	16.9
4 보존 돼지육 기타	46,286	25,379	45,909	31,942	14,547	2.7	-54.5	-25.1
5 유채 (저에루크산)	6,221	7,664	5,075	1,448	14,327	2.6	889.4	23.2
6 절단한 냉동 양고기	10,437	13,961	1,018	1,027	4,947	0.9	381.7	-17
7 냉동 염소고기	2,643	2,593	2,639	2,731	4,104	0.7	50.3	11.6
8 절단한 양고기	1,151	7,321	1,171	543	2,554	0.5	370.3	22
9 보존 쇠고기	28,678	24,737	12,894	6,485	2,483	0.5	-61.7	-45.8
10 잣	11,341	77	131	85,271	1,812	0.3	-97.9	-36.8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11억 3,104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4,817억 원)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주로 러시아, 중국, 한국에서 수입함
  - 러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억 7,973만 5,000달러(한화 약 3,665억 원)로 24.7%의 비중을 차지함
    - \* 중국산 수입액은 2억 1,893만 9,000달러(한화 약 2,868억 원)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함
    - \* 뒤이어 한국산 수입액은 1억 1,843만 2,000달러(한화 약 1,551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54.3% 증가하였고, 수입 대상국 3위에 위치함
    - \* 이 외에도 폴란드(5.0%), 독일(3.9%) 순으로 집계됨

##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 '21/'22)	연평균 ( '18~'22)
전체	677,470	643,176	670,027	970,104	1,131,044	100.0	16.6	13.7
1 러시아연방	204,580	159,767	218,980	344,482	279,735	24.7	-18.8	8.1
2 중국	132,393	131,553	123,770	150,332	218,939	19.4	45.6	13.4
3 한국	40,212	51,864	57,303	76,746	118,432	10.5	54.3	31.0
4 폴란드	31,312	26,109	26,634	46,665	56,781	5.0	21.7	16.0
5 독일	27,432	27,115	26,759	42,482	44,162	3.9	4.0	12.6
6 말레이시아	18,400	16,576	14,906	18,264	31,058	2.7	70.1	14.0
7 미국	19,803	20,052	18,735	27,594	30,148	2.7	9.3	11.1
8 베트남	15,280	19,647	19,016	21,397	28,691	2.5	34.1	17.1
9 인도	3,441	8,961	3,594	14,210	23,377	2.1	64.5	61.4
10 이탈리아	10,288	9,490	10,081	19,802	20,935	1.9	5.7	19.4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htt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조제식료품(9.0%), 절단한 냉동 닭고기(4.0%), 초콜릿 기타(3.9%), 사탕수수 기타(3.8%)로 나타남

\* 조제품 기타의 수입액은 1억 202만 9,000달러(한화 약 1,337억 원)로 전년 대비 8.6% 성장하였고,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14.2%를 기록함

\* 절단한 냉동 닭고기는 4.0%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2년 4,506만 6,000달러(한화 약 590억 원)를 수입함

\* 초콜릿 기타는 3.9%의 비중으로 4,391만 8,000달러(한화 약 575억 원)의 수입 실적을 기록함

###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b>전체</b>	677,470	643,176	670,027	970,104	1,131,044	100.0	16.6	13.7	
1	조제식료품	60,035	58,637	61,673	93,943	102,029	9.0	8.6	14.2
2	절단한 냉동 닭고기	21,383	24,542	23,201	33,914	45,066	4.0	32.9	20.5
3	초콜릿 기타	31,567	31,982	31,023	41,944	43,918	3.9	4.7	8.6
4	사탕수수 기타	31,450	23,018	25,003	35,773	43,081	3.8	20.4	8.2
5	쌀(정미)	22,252	22,196	28,313	27,932	33,339	2.9	19.4	10.6
6	설탕과자 기타	21,160	22,140	18,722	26,007	33,120	2.9	27.4	11.9
7	음료 기타	14,631	17,346	15,297	19,162	31,881	2.8	66.4	21.5
8	스위트 비스킷	15,089	16,386	16,068	20,568	28,023	2.5	36.2	16.7
9	파스타	18,537	20,137	19,022	20,181	26,167	2.3	29.7	9.0
10	맥주	4,762	4,476	5,450	14,296	25,084	2.2	75.5	51.5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http://www.trademap.org))

### 한국의 對몽골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몽골 수출액은 1억 603만 1,000달러(한화 약 1,389억 원)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2.5% 성장함

- 농산물의 수출액이 1억 186만 6,000달러(한화 1,33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임산물, 축산물 순임

- 라면(8.2%), 맥주(7.7%), 기타 무알콜 음료(6.2%), 소스 조제품 기타(3.4%), 조제식료품 기타(3.3%) 등 가공식품이 상위에 위치함

\* 라면 수출액은 931만 9,000달러(한화 약 122억 원)로 전년 대비 54.0% 증가함

\* 맥주는 전년 대비 143.8% 성장하여 877만 3,000달러(한화 약 115억 원), 기타 무알콜 음료는 전년 대비 48.3% 증가한 703만 1,000달러(한화 약 92억 원)의 수출규모를 형성함

## 한국의 對몽골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전년비 ( '21/'22)	연평균 ( '18-'22)
전체	47,103	52,840	61,934	82,475	106,031	28.6	22.5
농산물	45,177	50,670	59,096	79,322	101,866	28.4	22.5
축산물	912	792	1,404	967	1,589	64.3	14.9
임산물	1,014	1,378	1,434	2,186	2,576	17.8	26.2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對몽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 '22)	증감률		
							전년비 ( '21/'22)	연평균 ( '18-'22)	
전체	47,103	52,840	61,934	82,475	106,031	100.0	28.6	22.5	
1	라면	3,559	4,451	4,379	6,051	9,319	8.2	54.0	27.2
2	맥주	1,384	1,350	1,121	3,599	8,773	7.7	143.8	58.7
3	기타 무알콜 음료	4,021	4,332	3,995	4,740	7,031	6.2	48.3	15.0
4	소스 조제품 기타	2,479	2,448	2,943	4,061	3,880	3.4	-4.5	11.8
5	조제식료품 기타	646	1,257	1,823	3,848	3,735	3.3	-3.0	55.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p>품목별 수입요건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품목에 대한 몽골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li> </ul>	<p>국내 수출업체</p>
<p>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li> <li>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li> <li>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li> </ul>	<p>국내 수출업체</p>
<p>법인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골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 전 몽골 경제개발부(MED)에 법인 등록 필수</li> </ul>	<p>몽골 수입업체</p>
<p>수입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골 관세청에 수입신고서 및 각종 통관서류를 구비해 제출 필요</li> <li>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 운송서류 ③ 포장명세서 ④ 원산지증명서(필수) ⑤ 매매계약서 ⑥ 건강위생증명서 등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li> </ul>	<p>몽골 수입업체</p>
<p>수입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서류검사를 시행하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 서류·물품·시험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li> <li>제반서류를 갖춰 수입검역 신청</li> <li>제출서류 : ① ISO인증서 ② 제품 리스트 ③ 가격 리스트 ④ 결제조건(선결제/후결제) 정보</li> <li>동물 및 동물성 식품은 가축병원검역을 실시하며, 식물 및 식물성 식품은 식물검역을 실시</li> </ul>	<p>몽골 수입업체</p>
<p>관세 납부 및 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li> </ul>	<p>몽골 수입업체</p>

# 통관 및 검역 제도

##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 수출 전 준비사항

<p>품목별 수입요건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품목에 대한 몽골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 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li> <li>- 몽골은 식량안보 및 전라물자 취급에 까다롭고,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 확인이 필요함</li> <li>- 특히, 우유, 분유, 육류, 주류 등에 대한 수입 제한 등 각종 규제 사전 파악 필요함</li> </ul> </li> </ul>
<p>원산지 증명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수출 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li> <li>-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li> </ul> </li> </ul>

### ▶ 국내 수출통관 절차

<p>수출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체는 상업증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li> <li>-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수출신고 수리 유형</b></p> <table border="1" data-bbox="271 1187 985 1342"> <tr> <td>서류 심사 후 수리</td> <td>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td> </tr> <tr> <td>현품 검사 후 수리</td> <td>우법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인덱스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td> </tr> <tr> <td>자동 수리</td> <td>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li> <li>-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li> </ul>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법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인덱스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법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인덱스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출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li> </ul> </li> </ul>
	<b>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b>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li> <li>-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li> </ul>
운송수단 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li> </ul> </li> </ul>

## ② 몽골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 몽골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업체의 몽골 법인 등록 및 식품 품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식품 수출입 업무가 가능하며, 수입 식품은 자체 식품검수, 품질관리체계(HACCP, GMP, GHP, ISO)를 도입한 생산 공장 생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은 통관 시 유통기한의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유기농·농축산물·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함</li> <li>- 동식물성 식품과 원재료를 수입자가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이름, 종류, 지역, 국가, 원산지명을 상차 30일 전에 검수 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함</li> <li>- 식품에는 제조일자과 보존기간 또는 제조일자과 유통기한이 포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통관 시 최대한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원칙임</li> <li>- 보존 유통기한이 1년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하며, 보존 유통기한이 6개월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2개월이어야 함</li> </ul> </li> </ul>
---------------------------	----------------------------------------------------------------------------------------------------------------------------------------------------------------------------------------------------------------------------------------------------------------------------------------------------------------------------------------------------------------------------------------------------------------------------------------------------------------------------------------------------------------------------------------------------------------------------------------------------------------

● 몽골 관세청에서 승인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CDF)와 각종 통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사전수입신고는 국경을 통과하기 전 혹은 세관에서 정밀검사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구비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물품 수령 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함
- 신고인은 하기 서류를 전자우편, 팩스 또는 세관정보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몽골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운송서류
③ 포장명세서
④ 원산지증명서(필수)
⑤ 매매계약서
⑥ 건강위생증명서
⑦ 법률에 지정된 라이선스(필요 시)
⑧ 수입 후 제품 보관할 창고 증명서 등
⑨ 은행 송금증 등

-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는 물품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 및 부과됨
- 몽골 정부가 규정한 자국산 전략 품목 중 분유, 우유, 육가공식품(소 · 말 · 낙타 · 염소 · 양), 밀가루, 생수 수출입 시 라이선스 취득이 선행되어야 함
- 몽골의 경우 통관 및 서류 제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OECD 국가보다 높은 편임
- 관련 서류를 몽골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청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평가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를 부과함

● 몽골 관세청의 명령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검역 의무

- 2018년에 개정된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이 몽골국경 진입 시의 검역 통제, 검사에 관한” 법으로 검역 사안을 규제함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국경순찰대, 식물검역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표준품질인증서(Standard and Quality Cer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에 한해 허가증을 발부함

**몽골 수입검역 신청 시 제출서류**

① ISO 인증서
② 제품 리스트
③ 가격 리스트
④ 결제조건(선결제/후결제) 정보

- 상기 서류는 수입 검역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수입식품의 서류가 완벽할 경우 보통 1주일 이내로 통관이 가능함

수입검역

- 제품의 위험도가 낮을 경우 서류 심사로 통관을 진행하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서류, 물품검사, 시험검사를 3개월 마다 수행
  - 제품의 위험도 기준은 하기와 같이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국경 및 세관 진입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함
  - 검수는 검역의 초기 검수로 제품이 파손 및 변질, 오염, 품질·안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실시함

화물 위험도 기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및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li> <li>• 몽골에 등록되지 않은 질병이나 해충, 독성 식물 등이 확산되어 몽골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li> <li>• 자연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li> </ul>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li> <li>• 자연환경 및 농작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li> <li>•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li> </ul>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및 동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없음</li> </ul>

-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은 가축병원 검역, 식물검역, 검사를 실시하며,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몽골 동식물 관련 검역 및 검사 대상 목록

- 각종 포유류, 애완 및 야생동물, 파충류, 수생동물, 새, 벌, 그것들의 새끼나 배아, 살아있는 알
- 고기, 우유, 부속 고기, 지방, 계란, 가죽, 뼈, 모피, 울, 캐시매어, 털, 내장, 볼, 발굽, 새의 깃털, 오리털, 발톱, 가축의 생식기, 쓸개, 샘 등 동물성 원재료, 제품
- 자연 작물이나 재배된 뿌리채소, 열매채소 등, 나무, 그것의 씨앗, 목욕, 부위
- 곡물, 감자, 채소, 잎, 사료, 원두, 경공업 및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식물성 기타 원재료, 건조된 식물, 수집, 목재, 그것의 일부, 각종 과일, 밀가루, 설탕, 양념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
- 혈 및 혈청, 혈장
- 사냥한 동물
- 각종 병을 유발하는 벌레나 곤충, 미생물 배양,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생물
- 동물 사체, 분노, 병을 유발하는 물질
- 흙, 청동, 돌
- 차량, 컨테이너, 포장용 스티로폼 및 완충재, 깔개, 동물의 털로 가공한 펠트, 가축의 사육 물품, 건축 부자재(줄, 끈 등)

수입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 원재료 제품의 원산지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물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li> <li>- 검역 시 국가전문검역청에 제출해야 할 정보 및 서류는 하기와 같음</li> </ul>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및 물품 검사 이후 관세율에 따른 통관 세금을 납부한 물품은 반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은 대외무역에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낮은 편임</li> <li>- 수입품의 경우 특별세 부과 대상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한 세율은 대략 5% 정도이나, 유제품, 꿀, 감자, 배추, 순무 등 일부 채소와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5~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함</li> <li>- 수입품에 부가가치세(VAT)는 세금 부과 금액의 10%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에 관세와 특별세 등을 부과하여 정함</li> <li>- 특별세 대상 품목 : 술, 와인, 담배, 맥주 등을 포함</li> <li>- 몽골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음</li> <li>- 관세를 납부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함</li> </ul> </li> </ul>

## FTA 체결현황

### 몽골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APTA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몽골 FTA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sup>3)</sup>

## 1. 수출 가능 품목

##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튜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튜립
- 묘목류 : 딸기묘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 축산물

- 돼지고기 및 돼지 지방

\* 몽골로 돼지고기 및 돼지 지방 수출 시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 도축장 및 가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후, 몽골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증(Import Permit)을 받은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 2. 수출 불가능 품목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없음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MK Mall(몽골)
업체 유형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Bayaraa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공식품은 인스턴트 제품과 김치임. 김치는 소매점이나 일부 레스토랑에서도 판매하고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몽골에서 대두와 인삼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지만, 신선한 대두를 대량 수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시장규모의 제약과 운송 비용으로 인해 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몽골은 신선 농산물 수입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산 수입 과일은 수요가 높지 않아서 수익성이 낮음
  - 규정 준수 및 인증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수요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 판매처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몽골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존재하지만, 고객 선호도와 구매력이 저마다 다양하므로 수요의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정하지 않음
- 최근 현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안전문제 등 이슈사항
  - 최근 몽골에서는 육류 식품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음. 고기는 몽골 식단에서 필수 요소이며 몽골은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상당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함. 최근 수입품 중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유해 항생제 성분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항생제와 병원균이 포함된 수입 육류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1. SPS

### 주요 SPS 내용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식품규격 코덱스(CODEX)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a href="https://www.epingalert.org/">https://www.epingalert.org/</a>
CODEX 식품 규격	식품안전정보포털	<a href="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codexStandardList.do?data_type=STAN&amp;menu_grep=MENU_NEW04&amp;menu_no=2926">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codexStandardList.do?data_type=STAN&amp;menu_grep=MENU_NEW04&amp;menu_no=2926</a>

### 통보문 개정 현황(2023년)

- 개정사항 없음

## 2. TBT <sup>4)</sup>

### 주요 TBT 내용

- 1999년 개정된 몽골 식품법의 9조 2.6항에 라벨링 규정 명시
  - 몽골 식품법에서 식품은 위생·품질 조건에 맞는 유의사항, 저장 조건 및 기간, 이용 방법,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몽골 관세청의 라벨링 규정에서는 수입식품의 라벨은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몽골 등록 법인만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식품인증제도
  - 육류, 식품, 유제품, 밀가루, 음료, 주류, 담배 등의 수입품은 ISO 및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몽골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취득해야 함. 또한, 몽골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MNS 인증 취득이 의무 사항임
- 알코올음료 유통 관리 및 알코올 증독 퇴치에 관한 법안
  - 본 법안의 목적은 알코올음료의 생산, 수출입, 재수출, 판매, 서비스 및 소비와 관련된 관계를 규제하고 알코올 증독을 예방·퇴치하는 데 있음
- 육류 및 육류제품의 생산 및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안
  - “표준화, 기술규정 및 인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모든 표준은 자발적으로 적용함
  - 인간 소비용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 운송, 보관, 국내의 판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해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법인, 관할 당국 및 공무원에게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적용함
  - 인간 소비용 소, 말, 양, 염소, 돼지 및 가금류의 생산 및 판매에 적용함
  - 제2조 제5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기관의 특정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기타 동물들의 육에도 적용함
  - 외국에서 몽골로 수입된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수의·위생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함
  - 자국민에 의한 동물 도축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a href="https://www.epingalert.org/">https://www.epingalert.org/</a>
식품 규정	몽골 식품법 1999	<a href="https://faolex.fao.org/docs/pdf/mon42182.pdf">https://faolex.fao.org/docs/pdf/mon42182.pdf</a>
MNS 표준	몽골표준계량원	<a href="https://estandard.gov.mn/">https://estandard.gov.mn/</a>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li> <li>• 원료</li> <li>• 중량</li> <li>• 제조사 및 수입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li> <li>•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li> <li>• 유통기한</li> <li>• 사용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량</li> <li>• 영양성분</li> <li>• 임산부 및 어린이 사용 관련 표시</li> </ul>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	
	제품명	• 제품의 명칭	
	원료	• 원료 목록	
	중량	• 순중량, 총중량 기타 수치적 지표	
	제조사 및 수입업체	•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자 명칭 및 주소	
	원산지	•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함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	• 제품을 제조 또는 포장한 날짜	
	유통기한	• 유통기한 및 저장 조건	
	사용 설명	• 제품 사용 또는 섭취 방법	
	열량	• 열량 정보	
	영양성분	• 영양성분과 함량 단위 표기	
	기타	• 주의사항	

\* 자료 : KATI농식품수출정보

• 소스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CJ 백설 닭볶음탕양념 290G / Тахианмахамтлагч 290г р																		
주의사항	제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найрлагыг үзээд өөрт харшлах орц байгаа эсхийг шалгаж хэрэглэнэ үү.																		
사용방법	닭고기와 볶아서 사용한다. Тахианы махтай хамт хуурч хэрэглэнэ.																		
유통기한	제조일로 부터 18개월 유통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냉장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십시오. Зөвөөр хадгалж, хэрэглэж, үйлдвэрлэсэн өдөрөөс хойш 18 сар хугацаанд хэрэглэж болно. Нарны гэрлээс хол сэрүүн хуурай нөхцөлд хадгална.																		
공식대리점	I&R MONGOLIA LLC "Ай энд Эр Монголиа" ХХК																		
제조사명 및 소재지	대한민국, "CJ" 그룹, BНСУлс, "CJ" корпораци																		
원산지	South Korea 한국																		
영양정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칼로리/Илчлэг</td> <td style="text-align: right;">133.9 kcal</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수화물/Нүүрс ус</td> <td style="text-align: right;">26.6 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설탕/Сахар</td> <td style="text-align: right;">9.4 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백질/Уураг</td> <td style="text-align: right;">4.4 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Өөх тос</td> <td style="text-align: right;">1.1 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td> <td style="text-align: right;">0.6 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td> <td style="text-align: right;">0 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td> <td style="text-align: right;">0 m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트륨/Натри</td> <td style="text-align: right;">2425.4 mg</td> </tr> </tbody> </table>	칼로리/Илчлэг	133.9 kcal	탄수화물/Нүүрс ус	26.6 g	설탕/Сахар	9.4 g	단백질/Уураг	4.4 g	지방/Өөх тос	1.1 g	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	0.6 g	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	0 g	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	0 mg	나트륨/Натри	2425.4 mg
칼로리/Илчлэг	133.9 kcal																		
탄수화물/Нүүрс ус	26.6 g																		
설탕/Сахар	9.4 g																		
단백질/Уураг	4.4 g																		
지방/Өөх тос	1.1 g																		
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	0.6 g																		
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	0 g																		
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	0 mg																		
나트륨/Натри	2425.4 mg																		

• 유제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서울우유 / Seoul milk calcium	
제조사명 및 소재지	Seoul Dairy Cooperative 131-861/70, Jungangcheon-ro, jungang-gu, Seoul, Korea	
수입처	Universe foods LLC	
용량 및 제품번호	1000ml, 19760262002297	
성분	우유, 칼슘	
유통기한	2020.06.09~2020.11.23	
연락처	89112305, 89112307	
영양정보	칼로리/Илчлэг	135 kcal
	탄수화물/Нүүрс ус	10 g
	설탕/Сахар	10 g
	단백질/Уураг	6 g
	지방/Өөх тос	8 g
	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	5 g
	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	0 g
	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	20 mg
	나트륨/Натри	100mg
	칼슘	200mg

## 인증

### [선택 인증]

- MNS 인증

- 몽골표준계량원(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은 1998년부터 몽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MNS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MNS 인증은 모든 수입품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은 아님. 그러나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수입품은 2005년 제정된 '규격화 적합평가에 대한 추가 규정 127호'에 따라 ISO나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MNS 인증을 받아야 함

장	조	열	국가코드	상품명
02				고기, 식품
04	04.02			설탕 및 기타 양념에 들어가는 원액 우유
	04.03	0403.10.	00	요구르트
	04.05			버터, 우유 기름, 진한 버터
	04.06			치즈, curds from sour milk
05	05.04			가축, 동물의(생선 외) 내장
09	09.01			로스티드커피 및 원두커피, 카페인 커피, 무카페인 커피
	09.02			맛, 향이 첨가된 차, 첨가되지 않은 차(ferment, no ferment tea)
11	11.01	1101.00		밀, 호밀
	11.02	1101.00		밀, 호밀 외 기타 밀가루
	11.04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곡물
15			가축, 동물 및 식물유	
16	16.01			고기, 보조 고기 및 혈액 등 영양식품
	16.02			고기, 보조 고기 및 기타 식품, 캔 식품
	16.04			생선 캔, 생선 알 등의 식품
17			설탕, 설탕 식품	
19			곡물, 밀가루, 녹말, 밀가루 식품	
21			기타 여러 가지 식품	
22			물, 음료, 알코올, 술, 와인, 간장	
24				담배, 담배 대체재

\* 자료 : KATI농식품수출정보

인증명	MNS 인증	
인증기관	몽골표준계량원 (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p>현지 수입업체 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상품 매매계약서, 제품 수량 및 가격, 제품에 대해 수행된 공인 실험실 테스트 결과, 담당 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필요시),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p>	

# 04

##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건강식품 등록 절차 및 대상 식품에 대한 정보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콜라겐
1			유형*	기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을 위해 보건부에서 제정한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에 따라 보건개발센터에 제품을 등록해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함</li> <li>•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하기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유통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사가 GMP 혹은 품질관리시스템, 식품안전시스템, 식품안전관리인증(ISO 9001, ISO 22000, ISO 17025 : 2018, HACCP), 해당 국가에서의 동등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어야 함</li> <li>- 원산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야 함</li> <li>- 원산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함</li> <li>- 상품 주소 혹은 포장지에는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함</li> <li>- 사용설명서는 몽골어로 기재돼야 함</li> </ul> </li> <li>• 등록 절차의 경우 9개 단계를 거쳐서 약 17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80만 투그릭 (약 280달러)임</li> </ul>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콜라겐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몽골 건강식품 등록 절차 및 대상 식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li> </ul>		
기타		<p>※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필요 서류  <a href="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amp;MENU_ID=180&amp;CONTENTS_NO=1&amp;bbsGbn=243&amp;bbsSn=243&amp;pNttSn=19014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amp;MENU_ID=180&amp;CONTENTS_NO=1&amp;bbsGbn=243&amp;bbsSn=243&amp;pNttSn=190149</a></p>		

No.	제목	현지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식품 전반
2			유형*	기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기업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음</li> <li>• 몽골 인구의 60% 이상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여 직접 바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li> </ul>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는 HMR 식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운송 문제, 주 수출 대상국인 러시아의 전쟁 상황과 내부 부정부패 문제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정, 송금 문제 등으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현지 바이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li> <li>• 자사는 버섯을 몽골로 수출하고 있으며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을 겪어 최근 수출이 저조해져 중단한 상황임</li> </ul>			
기타	-			

No.	제목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수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식품 전반
3			유형*	수입통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에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역계약서, 상업 송장, 선하증권, 환어음 내역서, 원산지 증명서, 관세 납부 확인서, 과세 표준 증명서, 수입 신고서 등이 요구됨</li> <li>• 수입 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li> <li>• 2020년 10월 29일 몽골이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몽골에 대한 APTA 양허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수출되는 양허 물품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li> <li>• APTA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li> </ul>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로 수출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까다로우며,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li> </ul>			
기타	-			

## 05

## 현지화 자문보고서

## 1. 육개장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입 요구 조건 충족 여부
- 식품 수출입 시 구비서류 및 절차
- 식품 수출입 시 검사 절차

## 제품 사전검토 결과

## • 수입 요구 조건 충족 여부

- 몽골 수입 제품은 몽골의 법령과 국제조약에 맞게 관세청에서 제정한 '식품원재료, 제품 수입 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몽골의 경우 식품마다 특별히 요구되는 상세한 요건이 없기에 상기 규례에 의거 수입이 가능

## • 구비서류

## 1) '식품법' 제11조에 따른 식품 수출입 시 요구조건

- 국가등록증(법인): 식품은 오직 몽골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만 수출입할 수 있음. 개인은 식품 및 원재료를 수입할 수 없음
- 무역계약서: 수출국 공장과 직접 또는 공장의 공식 계약매매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에는 수량, 개당 가격을 기입하며, 제품을 생산한 날짜와 종료 기간, 포장기준요건, 유통규칙의 준수, 운송수단의 위생성, 운송기록 작성에 관하여 기재함
- 품질 기준 충족을 인증하는 문서(HACCP, GMP, GHP, ISO): 수입 식품은 4가지 인증서 중 한 가지를 구비해야 함
- 제품 생산 날짜 및 유통기한을 문서 및 라벨지에 기재: 몽골 국경으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수입 식품의 보관기한이 3분의 2 이상 유효해야 함
- 기준, 기술 요건이 충족된 운송수단에 대한 증명 문서: 기준 및 기술적 요건이 충족된 보관창고, 운송수단이어야 함. 운송수단의 기술적 기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며, 온/냉방을 조절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운송해야 함

## 2) '식품 안전성 보장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식품의 원재료

- 수출국, 생산자가 실시한 식품 검사에 관한 평가서 : 수입 식품의 원재료의 안정성은 몽골국 및 국제적 지역 내에서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

### ● 검사

- 운송요건 : 용도에 부합하는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였는지 여부, 운송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 보존이 가능한 운송수단 여부, 식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품과 함께 운송했는지 확인
- 포장 상태 :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포장인지 여부를 확인
- 라벨링 : 제품명, 종류, 수량, 규모 등이 라벨지에 작성되어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성분표시에 정확성, 생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보관 기간에 관한 정보 기재 여부 확인
- 라벨링 관련 근거법령인 식품 안전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라벨링 시 다음과 같은 정보 기입
  - \* 제품 생산년월일, 보관기간 또는 사용기간
  - \* 식품 생산자, 수출입자, 공급자, 수입자,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생산국명
  - \* 식품 원재료명
  - \* 무게, 규모
  - \* 영양분
  - \* 성분표시
  - \* 사용 방법
  - \*\* 수입식품 원재료 및 제품의 라벨에는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언어 중 한 가지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함

### ● 수출업체의 준비사항 및 필요 조건

- 국가에 사업체로 등록된 법인이야 함
- 매매계약서
- Packing list
- Invoice
- 원산지증명서
- 대금지급 증명서(두 회사 간 계좌 이체 내역)
- 품질, 표준, 적절한 숙련, 경영체계 도입을 증명한 서류(HACCP, GMP, GHP, ISO)
- 식품 용기, 포장 요건 충족
- 수입식품의 보관 기간의 2/3 이상이 남아있을 것
- 수출국, 생산자가 식품에 대해 행한 분석 결과
- 어느 지역 세관을 통과하는지에 따라 해당 세관원이 현지 검사(lab test) 여부를 결정함

- 통관 절차 내 주의사항

- 1) 서류 검토

- 구비서류 및 세관 과표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근거자료로 수입자-수출자 간의 계약서 및 은행 송금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함. 또한, 구체적인 기재를 갖추지 않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의해 세관 검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에는 화물에 대한 내역, 용도, 용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 2) 세금 납부

-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 고지서에 근거하여 은행 또는 세관에 세금을 납부함.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식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음

- 3) 실물 확인(검사)

-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실물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 확인 후 화물을 반출하며, 실물과 서류가 상이할 경우 재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관세율

- 식품 관련 기본 관세율은 올란바토르 도착을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 및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의 15.5%임

